

『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1일

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이 성 칠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
- 「민법」 개정 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외 2건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조례 정비
 - 정신이상자 → 정신질환자
 - 장애자 → 장애인

- 「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사용용어 정비
 - 금치산자 → 피성년후견인
 - 한정치산자 → 피한정후견인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민법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- 본 『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맞게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고, 「민법」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